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참가단체 세부지침

2015.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용어의 정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단체(극단, 기획사)”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대상 공연 예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이란 공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1+1티켓(무료지원) 지원사업을 말한다.

· “참가단체(극단, 기획사)”라 함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정서를 승인한 자를 말한다.

· “주관 예매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의 티켓 판매처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 “1+1티켓(본인부담)”은 공연 관람자가 구매하는 티켓을 말한다.

· “1+1티켓(무료지원)”은 1+1티켓(본인부담) 구매 시 추가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지원하는 티켓을 말한다.

Ⅰ 개 요

1. 사업 추진 근거

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07.25.)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재정법」

2. 사업 추진 기본 체계

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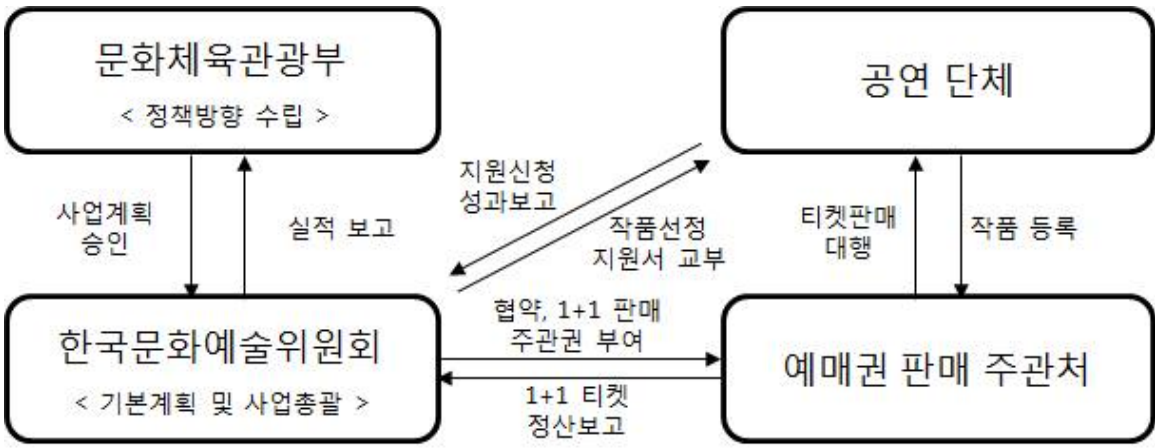

나. 사업 운영 기관 및 참가단체의 역할

구 분	역 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 현장 점검,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접수·검토 ·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참가 단체 (극단, 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자료)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1+1티켓(무료지원)' 판매 및 정산을 통하여 지원금 지원 신청 · 지원금 지원 신청 시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이용 관람객 및 관람료 등 필요한 현황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정보 제공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공연 관련 제반 자료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 조사(확인) 협조 등

Ⅱ 사업 진행 절차

선정된 작품이 주관 예매처 인터파크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진행 절차

가. 선정된 작품이 이미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1) 프로세스

1 공연티켓 1+1 참가신청	2 작품선정 및 승인	3 약정 체결
4 작품 정보 제공	5 주관 예매처 등록	6 공연 예매 및 수령
7 공연티켓 판매 결과보고	8 공연별 교부신청서 제출	9 예매처 판매금 정산
10 교부신청서 검수 및 지원금 교부	11 공연별 정산 완료	

2) 프로세스별 안내

프로세스	안 내	비 고
공연티켓 1+1 참가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참가단체 가입 및 참가 공연 신청	진행 완료
작품선정 및 승인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참가단체(작품) 선정	
약정 체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참가단체의 약정 체결을 위하여 약정서에 서명, 스캔 후 메일로 발송(첨부파일 참조)	향후 진행
작품 정보 제공	· 필요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참가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발송	

프로세스	안 내	비 고
주관 예매처 등록	·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공한 작품 정보를 토대로 주관 예매처에서 직접 입력 · 필요 시 주관 예매처에서 공연단체로 연락하여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수정 필요 시 인터파크 프로그램 '티켓 매니저'를 통해 요청	
공연 예매 및 수령	· 고객이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 수령	
공연티켓 판매 결과보고	·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 주관 예매처가 참가단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티켓 판매 실적 보고	
공연별 교부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공연티켓 1+1 전용 페이지에서 공연별 결과보고 및 지원금 교부 신청	
예매처 판매금 정산	· 주관 예매처와의 약정에 따른 판매금 정산	
교부신청서 검수 및 지원금 교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및 교부 신청서류 검수 및 지원금 교부	
공연별 정산 완료	· 공연별 사업 종료	

나. 선정된 작품이 현재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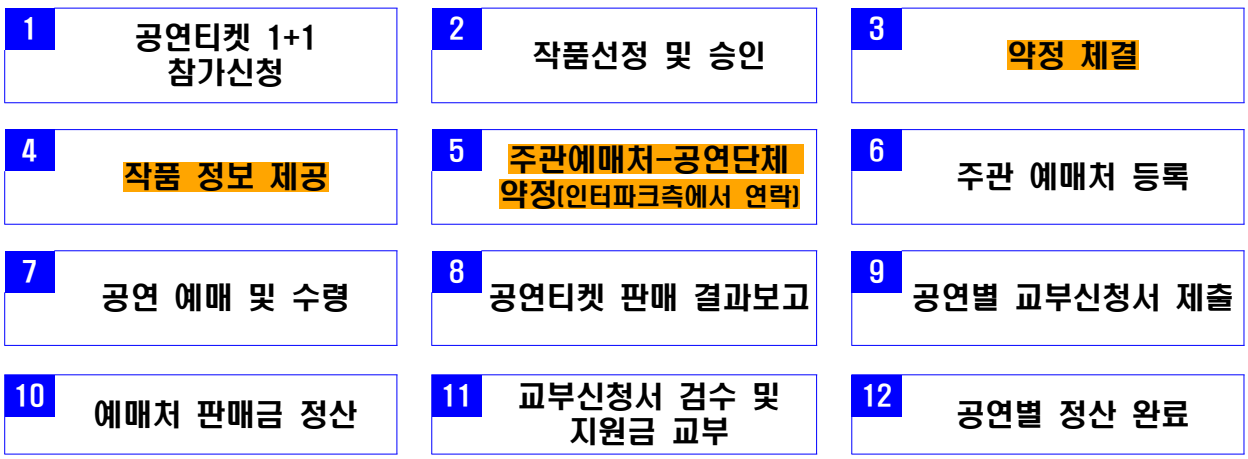

2) 프로세스별 안내

프로세스	안 내	비 고
공연티켓 1+1 참가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참가단체 가입 및 참가 공연 신청	진행 완료
작품선정 및 승인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참가단체(작품) 선정	
약정 체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참가단체의 약정 체결을 위하여 약정서에 서명, 스캔 후 메일로 발송(첨부파일 참조)	향후 진행
작품 정보 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참가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메일로 발송(첨부파일 참조)	
주관예매처-공연단체 약정 체결	· 주관예매처에서 공연단체로 연락하여 약정 체결	
주관 예매처 등록	·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공한 작품 정보를 토대로 주관 예매처에서 직접 입력 · 필요 시 주관 예매처에서 공연단체로 연락하여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수정 필요 시 인터파크 프로그램 ‘티켓 매니저’를 통해 요청	
공연 예매 및 수령	· 고객이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 수령	
공연티켓 판매 결과보고	·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 주관 예매처가 참가단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티켓 판매 실적 보고	
공연별 교부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공연티켓 1+1 전용 페이지에서 공연별 결과보고 및 지원금 교부 신청	
예매처 판매금 정산	· 주관 예매처와의 약정에 따른 판매금 정산	
교부신청서 검수 및 지원금 교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및 교부 신청서류 검수 및 지원금 교부	
공연별 정산 완료	· 공연별 사업 종료	

Ⅱ 세부 지침

1. 세부 지침 목적

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수행에 대하여 참가단체(극단, 기획사)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나. 준수사항을 불이행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자 함.

다. 본 세부 지침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음. 프리오픈 시에는 본 세부 지침을 준용함.

2. 사업 참여 조건

가.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본 세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참가단체(극단, 기획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대상 공연 및 판매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주관 예매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다. 주관 예매처는 인터파크이며, 주관 예매처 외 '1+1티켓(무료지원)' 적용 권종을 판매할 수 없음. 단, 본 사업의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티켓 판매는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함.

3. 지원 내용

가. 7만원 이하 공연티켓에 한함(2015.10.~)

나. 5회 이하 공연의 경우는 '1+1티켓(무료지원)' 기준 회당 200석을 한도로 함. 6회 이상 공연의 경우는 '1+1티켓(무료지원)' 기준 회당 100석을 한도로 함.

다.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5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함(2015.12.~)

라.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접수 및 공연 기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일 정
예매사이트 프리오픈 (‘15.8.18.)	신청 접수	08.05. ~ 08.10.
	해당 공연 기간	08.18. ~ 08.31.
예매사이트 공식오픈(1차) (‘15.8.27.)	신청 접수	08.11. ~ 08.19.
	해당 공연 기간	09.01. ~ 12.31.
예매사이트 공식오픈(2차) (‘15.10.1.)	신청 접수	09.4. ~ 09.18.
	해당 공연 기간	10.01. ~ 12.31.
예매사이트 추가 오픈 (‘15.11.12.)	신청 접수	10.28. ~ 11.3.
	해당 공연 기간	11.14. ~ 12.31.
예매사이트 추가 2차오픈 (‘15.12.30.)	신청 접수	12.11. ~ 12.18.
	해당 공연 기간	2016.1.1. ~ 2.29.

* 프리오픈의 적용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 사이의 공연이며, 동일 공연이라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공연은 재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2차 오픈의 경우도 동일함.

4. 참가 단체 의무

가. 참가 단체는 공연 시장 활성화와 공연 수요층 확보를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티켓 판매 및 정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나. 참가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하여 티켓 판매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다. 참가단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시 참여 공연의 1+1 티켓 이용 관람객 및 관람료 등의 현황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라. 참가단체는 1+1 티켓 사업의 안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티켓 1+1 사업 홍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공연 관련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마. 후원 명칭 사용 의무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참가할 것을 확정한 이후 제작되는 공연 홍보물에 해당 공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명기

ㅇ 현수막 등 홍보물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공연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등 인쇄물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공연입니다.
ㅇ 로고 내려 받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www.arko.or.kr/arkoinfo/page6_1_1.jsp

5. 공연 좌석

가. 주관 예매처 시스템상 공연티켓 1+1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음.

나.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대상 공연은 지원 확정 시 결정된 좌석수, 공연 회차, 티켓 권종, 1+1 적용 티켓 가격을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다. 좌석별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좌석수 총합 100석 내 가능

6. 예매권 가격 및 판매

가. 티켓 가격의 7만원 제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최대 1인당 2매의 '1+1티켓(무료지원)'을 구매할 수 있음(최종 관객이 가지는 티켓 매수는 총 4매). 단체 구매는 불가능함.

다. '1+1티켓(무료지원)'으로 배정하는 좌석에 여타 다른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라.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1+1티켓(무료지원)' 적용 권종을 판매할 수 없음.

마. '1+1티켓(본인부담)' 가격과 대비하여 참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할인권 최저 가격이 50% 이하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예) '1+1티켓(본인부담)'이 2만원으로 신청한 경우(티켓정가와 무관), 단체의 프로모션에 의한 1만원미만 판매 금지(이벤트할인, 소셜판매등 포함)

7. 티켓 판매 수수료 및 대행료 지급

가. 참가단체(극단・기획사)는 주관예매처에서 판매된 1+1 티켓 중 '1+1티켓(무료지원)'을 제외한 '1+1티켓(본인부담)'에 대하여 참가단체와 주관예매처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주관예매처에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함.

나. 참가단체(극단・기획사)는 '1+1티켓(무료지원)'에 대하여 주관예매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시스템구축 및 운영대행료(이하 '운영대행료'로 한다)를 주관예매처에 지급함.

다. 주관예매처에서 공연 종료후 판매 대금을 정산시, 주관예매처와 참가단체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제반 수수료와 '1+1티켓(무료지원)' 운영대행료를 사전 공제할 수 있으며, 참가단체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라. 참가단체가 공연 티켓 1+1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 세부지침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혹은 '1+1티켓(무료지원)'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기타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티켓판매 주관처에 선 지급한 운영대행료를 반납 받을 수 없음.

8. 정산금의 지급 보류

가. 참가단체(극단, 기획사)가 본 세부지침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보류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음.

나. 위 내용은 공연 종료 후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관련 민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원 해결 시까지 판매대금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함.

다.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 및 불성실 제출에 대한 불이익

1) 제출 지연 시 타 작품 정산 이후로 늦어짐에 따른 해당 작품 지원금 교부 지연

2) 불성실, 판매실적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 시 지원금 교부 불가 판정

라. 위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참가단체에게 정산하는 지원금을 의미하며, 주관 예매처에서 정산하는 사항은 별개로 함.

9. 지원신청 제외 대상

가. 기존에 공지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하며, 만약 정산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함.

-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 언론사 및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예기금 미정산 단체
- 길거리 호객행위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10.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규정

가. 참가단체(극단・기획사)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형사고발토록 조치함.

나. 참가단체(극단・기획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사이트를 통해 사실 공고할 수 있음.

다. 본 약정에 따른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단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 기준
1. 참가단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매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한 경우(단,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3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 사재기(매점매석) : 공연 현장 점검 시 '1+1티켓(무료지원)' 판매량 대비 객석 70% 미달 시 사재기로 간주	
3. 이벤트성 초대관람이나 후원금, 타 지원금 등으로 초대관람이 명백하나 이를 유료티켓으로 판매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 시 참가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작품이 진행될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5. 공연단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예매자의 공연일자를 변경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6. 참가단체가 판매 진행 중 가격을 변경(권종 추가는 제외)하거나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차액환불, 관람료 환불은 참가단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며 환불이 완료될 때 지원금 지급 · 1회~2회 변경 : 사유서 접수 및 경고 조치 · 3회 이상 변경 시, 6개월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참가단체(극단·기획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료, 부실 공연, 공연 시간변경, 장소변경, 통보 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 민원 처리 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
8.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1 티켓을 구입, 판매, 운영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처리

11. 보조금 관리 운영

가.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 주관예매처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참여단체(극단, 기획사)에 '1+1티켓(무료지원)' 판매 실적 보고

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작품별 결과보고 및 지원금 교부 신청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품별 결과보고 검수 및 지원금 교부 승인

라. 작품별 '1+1티켓(무료지원)' 판매금 정산 완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한 보조금 신청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주소창에 www.ncas.or.kr 입력
2. 해당 기관 페이지로 이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배너 클릭 후 페에지로 이동
3. 지원신청서 작성	· 시스템상 명시되어 있는 양식 작성
4. 교부신청서 작성 - 예술위 승인 후 교부 신청 - 사업별 각 1회 신청 - 소정 붙임 자료(필수)	· 소정 붙임자료 ⓐ 통장 사본 ⓑ 사업 정산보고서(주관 예매처에서 수령한 자료)
5. 첫 화면에서 신청 및 제출 현황 확인	·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현황, 성과보고서 제출 현황 등 확인 가능